

#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유재천  
서강대 신방과 교수

## I. 서론

언론과 인권의 관계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의 관점에서 분석되고 논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언론의 자유 그 자체가 기본권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의 보장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자연히 언론의 책임보다 자유에 관심의 초점을 두게 된다.

반면 또 다른 하나의 과제는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언론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을 위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심사에 대한 논의는 언론의 자유보다 책임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전개되어 왔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는 언론이 다른 기본권을 옹호하느냐 또는 침해하느냐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언론활동을 분석하게 된다. 한국언론의 보도성향과 인권침해에 대한 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이 과제의 범주에 속한다.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대부분의 언론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는 주로 기본권 가운데서도 인격권에 한정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언론과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침해에 국한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 같은 관심은 언론과 인권과의 관계를 인격권에 한정시켜 보는 협의의 관점이라 하겠다.

인권의 개념은 말할 것도 없이 인격권만이 아닌 다른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것이다. 「세계의 인권선언」 뿐만 아니라 현대국가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은 기본권 전반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다. 이런 시각에서 언론과 인권과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마땅히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법 앞에 평등할 권리,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와 학문 및 예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재산권 등 모든 인권을 언론이 얼마나 존중하고 있으며, 또는 침해하거나 훼손하고 있는가에 우이의 관심을 넓혀야 한다.

말하자면 언론과 인권과의 관계를 보다 광의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럼으로써 언론이 참다운 본래의 구실을 다하게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전제로 하고 주어진 과제인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II. 사생활의 권리와 그 한계

인격권에 대한 침해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언론에 의한 침해는 명예훼손과 사생활의 침해로 요약된다. 우리 헌법은 제 10 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선언하고 있으며, 또 제 17 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하고, 제 18 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헌법조항은 모두 명예권과

사생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 헌법은 제 21 조에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언론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명예는 사람의 인격, 능력, 기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니고 있는 속성에 관한 사회적인 적극 평가며,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명예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한편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사항이 권한이 없이 공표되는 것으로부터 보호 받는 개인의 홀로 있을 수 있는 사적인 권리라고 하겠다. 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광의로 해석하면 인격적 권익의 총체가 되며, 협의로 파악할 때는 (1) 비밀영역에 대한 권리 (2) 사적 영역의 존중에 대한 권리 (3) 인격적인 감정세계가 존중될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 받지 않을 권리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1) 개인으로서의 정신적·심리적 본질 또는 성명·초상·혈통 등 개인의 동—성의 표상에 대한 타인의 침입과 공개에 저항하고, 그 이용과 공개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힘 (2) 서신·전신·전화 등에 의한 개인의 사적 정보와 개인의 사적활동에 대한 감시에 저항하고, 그 공개와 폭로의 범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 (3) 개인의 사적인 생활공간, 즉 자체 재산·문서·장서 등에 대한 물리적 및 기타의 침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관점도 협의의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대체로 프라이버시의 권리는 명예에 대한 권리와 분화되지 않은 채 혼용되어 온 경향이다. 그렇지만 이 두 권리에 대한 개념은 구분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들 권리에 대한 침해도 분리되어 규제되어야 할 것이다.

명예훼손은 개인의 명성이나 신망에 대한 침해를 말한다. 훼손이란 개인에 대한 존엄·경의·신용 등을 떨어뜨리거나 혹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야시키는 것, 또는 개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등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명예훼손이란 (1) 개인을 공공연한 증오·비방·혐오·모욕적 언동·악평·경멸·조롱·배척·강등·창피 등에 노출시키는 말 (2)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타인에 대한 좋지 않은 의견을 갖도록 유발하는 말 (3) 사회에서의 우호적인 상호작용과 신용을 박탈하는 말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뉴욕주 형법은 명예훼손을 단순한 말보다는 문서·인쇄물·초상·인쇄된 그림이나 사진·사인 등에 의한 악의 있는 공표로서 (1) 생존해있는 사랑이나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을 증오·비방·경멸·조롱에 노출시키는 것 (2) 타인으로 하여금 개인을 회피하도록 만드는 원인 (3) 개인의 직업이나 사업 또는 협동이나 교제관계에 손상을 입히는 성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은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1) 명권의 주체인 사람, 즉 피해자의 특정성 또는 특정 가능성 (2) 행위의 공연성으로써,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할 때 (3) 사실의 적시로서, 적시된 사람의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특질이면 무엇이든 전부 해당된다 다만 그 사실을 형법 제 310 조의 사실증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된다. (4) 사실의 적시행위로서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방법으로 구두이건 문서이건 제 3자가 인지할 수 있는 외부적 표명은 모두 이에 포함된다. (5) 피해자에 대한 어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침해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현실적으로 침해할

필요는 없다 할지라도 침해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이 된다. (6) 고의의 여부로서, 어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기타 출판물이나 전파매체를 통해 전기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을 때에는 성립되며, 고의성이 개재되었을 때에도 물론 성립된다.

이에 비해, 사생활의 권리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 (1) 공표된 내용이 사생활의 사실 또는 사생활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우려가 있어야 하고 (2) 일반인의 감수성용 기준으로 하여 공개됨으로써 심리적 부담이나 불안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일반인에게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개인이 실재적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졌어야 된다. (4) 공개된 사적 사항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필요하다. (5) 공표된 사항의 진실성이나 공개자의 악의의 결여는 항변이 될 수 없으나, 당해 당사자의 문서에 의한 사전동의를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된다.

이상과 같은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성립요건을 보면 명예훼손의 성립과 면책사유와 비교하여 차별적인 성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의 권리는 국민의 알 권리 또는 사회적 공익과 관련하여 제한을 받는다는 특성을 지닌다. 만약 사생활의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 어느 편을 우선시킬 것인가는 이익교양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판단하게 된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생활의 권리침해는 한계를 지니거나 또는 면책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첫째 공표자가 당해인의 동의를 얻어 놓은 경우에는 면책의 사유가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형식을 갖추지 않은 동의는 분쟁을 증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형식을 취해야만 한다. 즉 앞에서 말한 당해 당사자의 문서에 의한 사전동의를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것은 계약법상의 정식수속에 따른 계약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그 계약자는 성인이어야 된다. (3) 그 계약은 사생활공표에 대한 어떤 형태의 대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은 금전적인 것을 의미하지만 무형의 대가도 포함된다. (4) 동의의 내용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어야 한다. 이것은 예컨대 개인의 초상을 1 회만 사용하기로 한 동의는 그것의 계속적인 사용을 동의한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둘째 권리의 포기를 들 수 있다. 권리의 포기란 어떤 사정하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자의 사생활이 공표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침해가 되지 않는다.

셋째 공익의 이론을 들 수 있다. 이것은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써 보도적, 교육적, 계몽적 가치가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의 권리에 우선하며 따라서 침해의 면책사유가 된다는 이론이다. 즉 사생활의 공개가 공익이 될 경우는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관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실 또는 진실을 공표하여야 하며, 허위나 비도덕적인 공표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넷째 공적 존재론을 들 수 있다. 공적 존재 또는 공적 인물과 같이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생활의 권리의 한계를 정한다는 관점이다. 예컨대 배우나 가수 또는 정치가나 예술가 등 소위 자발적 유명인과 타의적 대중의 관심대상이 되는 사람들, 즉 범인이나 그 가족, 피의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유명인은 자기의 사생활을 공중에게 비쳤다고 보아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거나 또는 유명인의 사생활은 이미 사적인 것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라는 관점에 근거한 이론이다.

### III. 프라이버시 침해현황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들을 유형화시켜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범주화할 수 있다.

첫째 당해자 본인이 비밀로 붙여두고 싶어하는 개인에 관한 난처한 사적 사항이 언론매체에 의해 그대로 공개되어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등과 같은 사생활 또는 사적 사항의 공표를 들 수 있다.

둘째 사사에 관한 왜곡된 공표로서, 오해를 낳게 하는 허구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세인들로 하여금 특정인을 사실과 다르게 알도록 하는 유형이다.

셋째 개인의 이름·초상·경력 등 본인에게 고유한 속성, 즉 인격적 증표를 당해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상업적 불당이득을 추구하는 사사의 영리적 사용의 유형이 있다.

넷째 개인의 평온한 사생활이 적극적으로 침입 또는 간섭받거나, 소극적으로 감시, 도청, 촬영되는 행위 등에 의해 당해인의 불안과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유형이다.

이상과 같은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유형을 전제로 하고 우이의 언론이 얼마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지난 8년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중재신청접수 가운데 침해유형으로서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표 1>을 보면 지난 8년 동안 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된 침해건수 가운데서 명예훼손 및 사생활의 침해가 전체 신청건수의 71%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도별 경향은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지만 해당 년도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의 침해를 사유로 중재신청된 건수가 전체의 80%를 상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의 언론매체들이 얼마나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보호에 소홀한가를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표 1> 침해유형

( )은 %

구분	연도	명예 및 사생활	신용권(재산)	저작권	계
	'81년	23(52.3)	15(34.1)	6(13.6)	44(100)
	'82년	41(82.0)	9(18.0)		50(100)
	'83년	58(81.7)	13(18.3)		71(100)
	'84년	39(72.2)	12(22.2)	3(5.6)	54(100)
	'85년	44(74.6)	15(25.4)		59(100)
	'86년	25(51.0)	24(49.0)		49(100)
	'87년	39(82.9)	8(17.1)		47(100)
	'88년	36(65.5)	19(34.5)		55(100)
	소계	305(71)	115(27)	9(2)	429(100)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1977년부터 1989년 4월말 현재까지 13년 동안 연도 별 결정내역 가운데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차지하는 건수를 보여주는 것이 (표 2)이다. 여기서

말하는 결정이란 윤리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해당 신문사에 주의·비공개경고·공개경고 등을 한 것을 뜻한다(표 2)를 보면 지난 13년간의 결정 가운데서 「타인의 명예와 자유의 장」 위반사유가 가장 많아 전체 결정건수의 약 49%에 이르고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침해를 사유로 결정된 건수는 전체 결정이 건수의 약 18%에 달한다. 이를 다시 「타인의 명예와 자유의 장」 위반사례에 한정시켜볼 때 사생활 침해는 644건 중 237건으로 약 37%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우이의 언론매체들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을 얼마나 많이 공표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압도적으로 프라이버시침해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경향은 말할 것도 없이 우이의 규범문화가 아직 사생활을, 존중할 만큼 민주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언론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그렇게 빈번하게 공표한다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와 같은 우이의 규범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일 것이다.

〈표 2〉 연도별 결정이유별 내역

이유별	연도별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계
		報道와評論의 態度章 위반 (99)	오 과 재	12	23	14	10	10	6	11	4				
他人의 명예와 自由章 위반 (644)	봉 미 프 편 명	17	16	19	5	5	18	5	7	3	8	1	1	2	107
	속 성 라 이 버 시 침 해	10	5	1		41	97	60	71	25	24	8	21	3	366
	보 도 공 개	4	4	34	10	39	34	15	19	14	30	8	24	2	237
	사 생활 침 해						2		1	1			4		3 5
品格章 위반 (325)	소 동 만 사 기	46	37	44	17	14	30	18	12	5	2	7	3	4	239
	선 전 재 화	1	1			4	35	5	5	18	3				66
	진 진 타	9	1				1	1	2			1	2		13
	사 기 타	3	2	3	3			1	1			2	1		12 15
報道基準 위반 (68)	악 집 용 유 괴 간 독	3	5		1	5		1	1			37	12	1	66
	단 자 의 자 신 원 공 개		3	4	8	5	2	2			1			3	28
	의 자 신 원 공 개	1	1	1	1	10									13
	괴 자 신 원 공 개	1	4	2	3				1						11
	간 접 신 고 자 공 개				3										3
眞任章 위반 (22)			1	19	2										22
계		112	106	141	63	133	225	121	124	65	68	66	68	16	1308

#### IV. 결론

민주주의의 전제로서 국민의 알 권리, 즉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한편으로, 그같은 정보의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 가운데 특히 사생활 보호가 또한 요청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앞에서 간략하게 통계수치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이의 언론매체는 그 같은 요청에 제대로 부응해 오지

못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규범문화에 귀결되는 문제인 동시에 또한 우리 언론의 직업윤리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사생활의 권리에 관한 한 우리의 언론매체는 자유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관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매체로 하여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도록 직업윤리를 고장시켜야 할 과업을 성취하도록 노력을 기울지 않으면 안된다는 명제 앞에 우리는 서 있다고 하겠다.

한편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정보공개법」과 같은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널리 대두되고 있다. 만약 그와 같은 법이 제정된다면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하는 과제는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생활보호법의 제정도 그와 함께 요구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사생활의 보호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바는 정보화사회에 대한 대비라고 할 수 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미 수용되기 시작한 '뉴 미디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당면해 왔던 사생활의 침해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예컨대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관한 방대한 규모의 개인적 자료들의 공개 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다. 정보화사회에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망은 그것을 이용하는 개인들의 방대한 자료를 저장하게 되며, 이 자료의 상업적, 정치적, 이용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는 시급히 논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맥락에서도 사생활보호법의 제정작업은 초미의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매스컴 전공)

□ 저술: 「한국의 언론」 (1968. 공저), 「현대 사회와대중문화」 (1975. 공저)

「인류의 미래상」 (역서), 「한국언론과 언론문화」 외

□ 현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장, 한국언론학회 회장, 언론중계위원회 중계위원